

# 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지침

제정 2009. 06. 13

개정 2010. 04. 10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」 제7조에 의거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인선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감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2.4.17.>

③ 위원장은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심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2인 이내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진흥원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선정
2. 감사인 선정·평가기준, 방법의 제정 및 감사인의 변경
3. 기타 감사인 선정에 있어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위원회의 소집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단, 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 소집 및 운영은 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계획과 심의안건을 각

위원에게 사전 통지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7조(감사인 선정 절차)** ① 위원회는 공개입찰을 통해 제안사를 모집하고 제안서를 평가하여 감사인을 선정한다.

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**제8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회계부서의 장으로 한다.

**제9조(수당 등의 지급)**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비밀유지)**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회의록)**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의결사항
4. 기타 중요사항

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기타사항)**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(2009.6.13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0.4.1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